

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5.25.(수) 09:32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김석진 부위원장
표철수 상임위원
허 욱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(2019-25-108)

○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'에 대해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
- 「방송법」 개정('18.12.24 공포, '19.6.25 시행)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·재승인 심사사항으로 '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여부'가 신설(제17조 제3항 제2의2)되어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*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*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

- 지상파방송사업자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, 재허가·재승인 심사 시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, 「전파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여부를 심사에 반영

※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25일 시행될 예정

나.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9-25-109)

○ '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(안)에 관한 건'에 대해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
- 2019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* 주요내용

-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·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,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·사회·문화적 필요성, (재)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
- 심사결과 총점 1,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'재허가'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'조건부 재허가' 또는 '재허가 거부'할 방침
- 2019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,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 추진 등

<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>

구 분	방송사업자
UHD (3개사)	· 수도권 UHD(3개사) : 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, (주)에스비에스
DTV·라디오 (20개사)	· 지역 MBC(13개사) : 광주문화방송(주), 대구문화방송(주), 목포문화방송(주), 안동문화방송(주), (주)엠비씨강원영동, (주)엠비씨충북, 여수문화방송(주), 울산문화방송(주), 원주문화방송(주), 전주문화방송(주), 제주문화방송(주), 춘천문화방송(주), 포항문화방송(주) · 지역민방(7개사) : (주)광주방송, (주)울산방송, (주)전주방송, (주)제주방송, (주)지원, (주)청주방송, (주)티비씨
DTV (1개사)	· OBS경인TV(주)
라디오 (12개사)	· (주)YTN 라디오, (주)경기방송, (주)경인방송, (재)국악방송, (재)가톨릭평화방송, (재)극동방송, (재)기독교방송, (재)불교방송, (재)원음방송, (재)국제방송교류재단, (재)부산영어방송재단, (재)광주영어방송재단

다.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9-25-110)

○ ‘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(안)에 관한 건’에 대해 신승한 지역미디어 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2019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(주)광주방송, 안동문화방송(주), (주)제주방송, (주)지원, (주)티비씨 등 5개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(안)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*** 주요내용**

- 신청서류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·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,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, 직전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
- 심사결과 총점 1,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‘재허가’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‘조건부 재허가’ 또는 ‘재허가 거부’할 방침
- 2019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,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하는 등 관련 절차 추진 등

라.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9-25-111)

○ '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(안)에 관한 건'에 대해 천지현 이용자 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2조에 따라 「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(안)*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*** 주요내용**

· 평가 대상 : '18년말 기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, 총 32개 사업자(중복 제외 22개사)

※ 이동전화 3개사, 인터넷전화 3개사, 초고속인터넷 9개사, 알뜰폰 7개사, 부가통신 일반 6개사, 앱마켓 4개사(부가통신의 경우 월간 순 이용자 수, 앱마켓의 경우 앱 등록 수 기준)

· 평가 기준 :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2항의 각 호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, ②관련 법규 준수 실적, ③피해예방 활동 실적, ④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, ⑤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

· 결과 활용 : 우수 사업자에 대한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 보상

7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'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'에 대해 김재철 방송광고 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·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·공익성 제고 등을 위한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*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*** 일부개정안 주요내용**

·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,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·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,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31)